

주부의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for Estimating the Compensation to Homemaker in Accident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문숙재
성심여자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정영금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ens University

Professor; Moon, Sook Jae

Dept. of Home Management Songsim College for Women

Assistant Professor; Jeong, Young Keum

목 차

I. 문제의 제기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to measuring proper compensation for the homemakers. For this purpose, the value of household work is measured by variables and methods: overall substitute(OSE), specialised substitute (SSE), opportunity cost(OCE), reservation wage(RWE), subjective evaluation(SE).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values by OSE, SSE, OCE, RWE and SE are respectively 497,996, 676,847, 616,683, 707,601 and 540,366 won.
2. The values of homemakers are calculated individually by he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 The values by SSE and OSE are increased in the order of type I · IV · III · II which are divided by the number of family member and age of homemaker.

*이 논문은 1990년 문교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문제의 제기

오늘날 사람들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 등 많은 위협요인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교통사고는 사회 최대의 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1988년 한해동안 일어난 교통사고는 모두 216,719건이 발생하였다. 전국 각급 법원에는 교통사고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사고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고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고발생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을 기준으로 상실소득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때 주부는 화폐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직자와 동등하게 처리된다. 그러나 주부의 경우는 가정에서 많은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주부의 일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시장상품으로 대체시켜야 하므로 비용이 지출된다.

실제로 남편 및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는 35세의 주부가 사망하였을 때 1990년도를 기준으로 한 사망보험금은 32,601,200원이 된다.¹⁾ 이 금액중 장례비와 위자료 등의 일정금액을 제외하고는 주부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으로 간주되는 일용노임단가 276,250원이 보험금을 좌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부들은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약 11시간의 일을 하고 있으므로 주부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주부의 일을 대신해 줄 누군가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주부의 가정노동시간과 노동대체비용을 고려하여 계산한다면 60,410,880원이 지급되어야 한다.²⁾ 또 다른 예를 들면 남편 및 자녀 1명이 있는 42세의 주부가 1990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사망보험금은 23,567,030원이 된다.³⁾ 그러나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주부가 실제로 가정에서 수행하는 노동량을 고려한다면 43,087,14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실제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주부들에게 정당하게 주어져야 할 보험금의 54%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은 주부의 사망시 지급되는 상실소득액의 기준을 가정노동의 대체비용인 원 538,438원으로 현실화하였기 때문이며, 전문가가 아

닌 과준부에게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원 420,469원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일용노임단가와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⁴⁾ 또한 일용노임단가는 일당 11,050원에 취업가능일수인 25일을 곱한 금액이므로 휴일이 없는 주부에게는 매우 부당한 금액이다.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시에는 장래의 소득액이나 취업가능성보다는 사고당시의 실질소득액이나 노동가치가 가장 중요시된다. 그러므로 취업자들의 평균노동시간보다 많은 약 10시간 이상씩 가정에서 일하는 주부를 무직자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주부에 대한 배상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동가치를 인식하고 가정노동의 생산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주부의 노동능력을 가치화하고 가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고시키는데 관련된다.

그러나 주부의 상실비용을 측정하는 것은 주부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조사결과가 있을 뿐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개별 주부의 상해시에 그 가정에서 입게 되는 피해를 정확히 입증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노동가치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주부의 가정노동가치뿐만 아니라 주부에게 주어질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가정노동가치가 정확히 계산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주부들이 갖는 불이익이 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가정노동가치를 단기로 하였으며 이를 평균적으로, 가정환경별, 주부개인별, 주부유형별로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노동의 가치

가정노동은 가정내에서 누군가에 의해 수행됨으로써 가정이 그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즉 일상생활에서 가정의 기능을 유지해주는 활동들로서 가정에서 가족원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사회

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가족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거나 가족이 직접 소비하기 위해 가정에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가정노동을 통해 가정생산이 이루어지므로 가정노동은 가정생산을 위한 투입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노동이 가정내에서 행해지지 않는다면 가정생산물이 산출되지 않게 되며, 이때는 외부의 노동력을 고용하거나 사회에 대체시켜야만 가족원의 욕구충족이 가능하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는 가정노동을 대부분의 가족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담당자는 가정주부이다.

가정노동시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주부들은 1일 평균 8~12시간(임정빈, 1981; 이정수, 1984; 문숙재·정영금, 1988)을 가정생산에 투입하고 있다. 또한 가정노동의 분담에 관한 연구(이정수, 1984; 이정수·고경애, 1985)를 보더라도 과거보다는 가정주부를 제외한 가족원의 분담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나 여전히 가정주부가 대부분의 가정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족원들이 분담하더라도 분담하

는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가정주부들이 가정노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가족원의 성장·유지에 필요한 모든 욕구가 유급의 노동자나 시장재화를 통해 충족되어야 할 것이므로, 가정주부들이 수행하는 가정노동은 비록 소득을 획득하는 활동은 아니지만 소비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가정에 대한 경제적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정노동은 시장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GNP에 포함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을 GNP에 포함시킨다면 실제적인 국민총생산이 증가할 것이므로 생산증대를 통해 국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가정노동이 생산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총생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시장생산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생산을 비교함으로써 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가정노동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가정노동의 화폐가치를 산출한 후 이것이 GNP에 기여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는데, 1960년 이후의 연구결과만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Murphy의 연구에서는, 60년대에 주부들의 가정생

<표 1> 가정생산의 GNP대비

평가방법	기준년도	대상자	총화폐가치 (단위10억\$)	GNP대비	대상국가 및 연구자
총합적대체비용법 (A)	1975	여성		24	프랑스.a
	1976	여성	386.4	22.6	미국 .b
전문가대체비용법 (A)	1960	주부	108.2	21.5	미국 .b
	1970	주부	186.1	19.0	
	1976	여성	515.0	30.2	
	1961	여성		27	캐나다.c
	1971	여성		28	
기회비용법 (A) (B)	1960	여성		20	미국 .d
	1970	여성		17	
	1960	주부	112.6	22.4	미국 .b
	1970	주부	201.6	20.7	
	1976	여성	522.5	30.6	
	1961	여성	011.6	29	캐나다.c
	1971	여성	025.6	27	
	1975	여성		30	프랑스.a

(A)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공제

(B) 세금만 공제

a:Chadeau & Fouguet(1981)

b:Murphy(1978,1982)

c:Adler & Hawrylyshyn(1978)

d:Weinrobe(1979)

산의 가치를 전문가 대체비용법으로 계산했을 때 GNP에 대한 비율이 21.5%였고 기회비용법으로 계산하면 주부의 기여가 22.4%였다. 또 1970년에는 전문가 대체비용법으로 계산했을 때 주부의 기여가 19.0%이고 기회비용법으로 계산했을 때는 20.7%로서 60년도나 70년도 모두 GNP대비율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976년의 조사에서는 전문가 대체비용법으로 계산했을 때 여성의 기여가 30.2%, 기회비용법에 의한 여성의 기여가 30.6%(여성의 기여율이므로 주부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로서 가정생산의 GNP에 대한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였다.(Murphy, 1978, 244~246; Murphy, 1982, 34)

가정학자로서는 Walker와 Gauger(1973)가 전문가 대체비용법을 이용하여 전체가정노동의 총화폐가치를 평가한 결과, GNP대비율이 31%로 추산되었다. Weinrobe는 기회비용에 의한 여성의 가정생산의 GNP대비율이 60년에 약 20%, 70년에 약 17%로 집계되었다(Weinrobe, 1974). Adler와 Hawrylyshyn(1978, 338)도 1961년 캐나다 여성의 가정생산가치를 계산한 결과 GNP대비율이 27%(전문가 대체비용법) -29%(기회비용법)였고, 1971년에는 27%(기회비용법) -28%(전문가대체비용법)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각 학자들의 연구는 가정생산의 상대적 중요성과 수량이 감소한다는 일반인들의 생각을 지지 해주지 않는다. 즉 이 결과는 가정에 대한 가정노동의 기여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부를 비롯한 모든 가족원들이 가정노동을 통해 국가에 기여하는 생산가치가 시간이 흘러도 감소되지 않음을 증명해준다. 다시 말해서 가족원들의 가정노동을 통한 가정생산을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든지 국민총생산이나 국민소득과 비교함으로써 그 기여를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정학에서나 경제학에서나 모두 가정노동의 가치를 국가적인 문제로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GNP에 대한 가정생산의 기여율을 계산하려는 시도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새 가족법 정착을 위한 준비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부의 가정노동가치와 세계문제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획기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문숙재, 최광, 1990). 따라서 각 주부의 가정노동의 가치를 평가하여 손해배상적 측면에

서 보상을 해주려는 정책적 차원의 연구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2. 가정노동가치의 평가현황

1) 보험금 지급에 의한 평가

주부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지급되는 배상금이 어떻게 결정되며 실제로 가정주부의 경우에 얼마가 지급되는가를 사망보험금과 부상·장해 보험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을 근거로 한다.³⁾

(1) 사망시

i) 장례비: 최고 60만원, 최저 40만원으로서 현실소득액의 90인분을 지급기준으로 한다.

ii) 위자료: 사망본인의 위자료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일 경우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유족의 위자료는 배우자 50만원, 부모 각 30만원, 자녀 각 30만원씩 지급된다.

iii) 상실수익액: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주부는 일용근로자 임금)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 현실 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릿쓰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때 생활비 공제는 부양가족 1인일 때 40%, 2인일 때 35%, 3인이상일 때 30%를 인정한다. 취업가능월수는 나이, 성별, 성년여부, 직업유무에 따른 계수를 적용한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된 사망보험금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1990년도 기준).

사례 1)

1. 손해요인

인적사항: 35세

가족사항: 배우자, 자녀 2명(20세 미만), 부모
직업: 주부-276,250원

생활비율: 30%(부양가족 3인: 남편, 자녀 2명)

2. 사망보험금

장례비: 600,000

위자료: 2,700,000

상실수익액: $276,250 \times (100 - 30)\% \times 151.5253 = 29,301,200$

합계: 32,601,200원

사례 2)

1. 손해요인

인적사항: 42세

가족사항: 배우자, 자녀 1명(20세 미만), 부모

직업: 주부-276,250원(일용노임단가)

생활비율: 35%(부양가족 2인: 남편, 자녀 1명)

2. 사망보험금

장례비: 600,000

위자료: 2,400,000(본인 100만원, 배우자 50만원, 자녀 30만원, 부모 각 30만원)

상실수익액: $276,250 \times (100 - 35)\% \times 114.5397 = 20,567.030$

합계: 23,567,030원

사례 3)

1. 손해요인

인적사항: 58세

가족사항: 배우자, 자녀 2명(20세 이상), 부모

직업: 주부 -276,250원

생활비율: 40%(부양가족 1인: 남편)

2. 사망보험금

장례비: 600,000

위자료: 2,700,000

상실수익액: $276,250 \times (100 - 40)\% \times 43.4229 = 7,197.340$

합계: 10,497,340원

(2) 부상 및 장해시

i) 치료비

ii) 위자료: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인정함.

iii) 휴업손해액: (1인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0%)로 계산함

iv) 기타손해배상금: 입(통)월일수로 계산함.

v) 상실수익액: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며

(일용노임단가 × 상실율 ×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릿즈 계수)로 산정한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된 부상; 장해보험금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례 4)

1. 손해요인

인적사항: 35세

직업: 주부 -276,250원

진단명: 뇌경막하 출혈로 개두술 시행(1급 상해)

치료일: 입원 100일

장해: McB. 상실율 -22%

2. 합의금(치료비 제외)

위자료: 250,000

기타손해배상금: $3,600 \times 100 = 360,000$

휴업손해액: $276,250 \div 30 \times 100 \text{일} \times 80\% = 736,640$

상실수익액: $276,250 \times 22\% \times 151.5253 = 9,208,950$

합계: 10,555,590원

사례 5)

1. 손해요인

인적사항: 42세

직업: 주부 -276,250원

진단명: 경골골절(4급 상해)

치료일: 입원 100일

장해: McB. 상실율 -15%

2. 합의금

위자료: 160,000

기타손해배상금: $3,600 \times 100 = 360,000$

휴업손해액: $276,250 \div 30 \times 100 \text{일} \times 80\% = 736,640$

상실수익액: $276,250 \times 15\% \times 114.5397 = 4,746,230$

합계: 6,002,870원

이상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피해자 본인의 조건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항목은 현실 소득액 추산 부분이다. 따라서 가정이 입계되는 상실 비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부에게 일용 근로자 임금이 아닌 합당한 임금을 제시해주어야 하므로 가정노동에 대한 정확한 화폐가치산정이 요구된다.

2) 판례에 의한 평가

가정주부는 무직자나 연소자와는 달리 가정에서

많은 노동을 수행하지만 실질소득이 없으므로 무직자로 간주되어 일실이익(逸失利益)이 임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된다. 일용노동자라는 것은 근로(노부)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노부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일용노동수입은 건강한 남녀의 최소한의 수입을 의미한다. 판례에서도 '사람은 누구나 보통 건강체로서 생존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른 보통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연소자, 무직자, 가정주부등은 소득은 없으나 거주지와 관계에 따라 농촌 또는 도시에서의 일용노동 중 가장 임금수준이 낮은 보통인부로서의 일은 언제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노임단가에 의한 일실이익의 산정을 실무상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가정은 소비경제의 주체이고 가정노동은 잉여가치를 낳지 않는 노동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무가치노동으로 볼 수도 있으나, 노동력의 재생산을 가져오는 경제적 기능체로 파악하여 유용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김종배, 1984, 106). 그러나 가정노동은 종류가 다양하며 가족원의 수나 연령, 가정생활환경 등에 따라 가정노동력이 모두 다르며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주부마다의 가정노동시간을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유상노동임금을 집계한 후 가정노동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겠으나 이러한 다양성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수익을 올리고 있는 주부의 일실이익은 그 수익액을,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김종배, 1984, 107).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첫째,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여성의 평균임금을 수익산정의 기초로 하되 어린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자의 전산업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일요임금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선택문제가 뒤따른다. 둘째,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 전일제의 직업종사자 ㉡ 주부를 본업으로 하지만 특수한 재능, 자격에 의하여 높은 소득을 얻는 자 ㉢ 가정 노동의 여가를 틈타서 시간제의 근무와 부업으로써 평균임금수준 이하인 수입을 얻는 자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중 ㉠㉡의 경우는 주부인 점을 고려하지 말고 단순한 직업인으로서의 실수입액을 기초로 계산하면 된다. ㉢의 경우는 명확한 계산이 어렵지만 노동능력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업주부와 같이 다루면 될 것이다. 셋째, 가사일체를 맡기고 직접 가정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주부의 경우에도 불구나 질병등으로 노동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업주부와 같이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다음에 제시되는 판례의 동향과 실무경향을 보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자는 견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단지 일용임금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판례동향 및 실무경향

대법원 1966. 11. 12 선고 66다 1504판결은 '사람은 누구나 보통 건강체로서 생존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별 또는 결혼하여 가정주부가 되고 아니되고를 불구하고 적어도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르는 보통 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주부에 대하여 일용농업 노동임금을 기초로 손해액을 계산한 원심조치를 시인하였다. 한편 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다 536판결에서는 '가정주부인 피해자에 관하여 학력, 경력, 가정주부로서의 위치 등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고 그에 장래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을 식모살이의 수입으로 단정한 것은 심리미진, 나아가서는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하여 주부의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를 보통 노동 임금 수준으로 인정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또한 하급심의 실무에서도 여자 일반 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는 여자근로자 평균임금 기준설을 채택하고 있다. 즉 주부인 피해자의 기준수입을 그 거주지 또는 그와의 관련에 따라 통계자료상의 최저한의 수입은 농촌일용 노임 또는 도시일용보통 인부노임 상당으로 청구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재판실무에서는 그 일당임금액에 월간 가동일수 25일을 곱한 금액이 월수입금액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서 1971. 4. 30 71다 467판결에서는 주부에게 일반농업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본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았고, 서울 민사지

법 1983. 7. 21선고 83가합 597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사고당시 농촌에 인접한 도시형 집합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을 경우에 농촌노임에 의해 수익산정을 하였다.

그런데 최근 1983년 3월 31일 기준의 여자농촌 일용 임금액은 일당 6,415원으로서 농촌 여성의 현실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며, 도시 보통인부임금은 일당 3,900원에 불과하여 월 97,500원 정도로 당시 서울의 파출부 임금(약 일당 5,000원)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2) 문제점

특이한 사례를 통해 주부 배상의 문제를 살펴보면, 서울민사지법 1983. 1. 13선고 81가합 4177판결에서 원고는 영관급장교인 주한미군인의 처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은 장애의 일실향을 청구함에 있어서 원고나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오기전에 미국 F.B.I. 직원으로 취업하였던 경력을 내세워 재직당시의 월 2,000달러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청구하였고, 가정노동의 실질내용에 따른 각 대체노임을 집계, 추산한 자료⁶⁾까지 증거로 제출되었다. 서울 민사교통부는 이 사건에서 주부인 원고의 일실향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의 남편이 전역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 이후에 있어서는 미국에서의 여성 근로자 최저수준의 수입(기능계 고용직)을 기초로 산정하면서 미합중국노동성 고용표준청의 서비스 계약공법에 의거한 임금결정등록표상의 최저액의 임금인 시간당 4.59달러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수입을 인정하였다.

이와같이 최근에는 처의 가정노동에 관하여 다양한 종류의 일의 실질내용에 따른 분석평가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⁷⁾ 일률적으로 최저한의 일용임금을 기초로 하는 실무관계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곽운직, 1984, 729).

따라서 「보통 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을 일용노동임금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실제 하급심의 실무에서도 여자근로자 평균임금 기준설을 따르고 있으므로 전산업 여자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까지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가정노동의 가치를 잘 반영해 주며 가정에서의 주부의 일실향을 보다 정확히 평

가해주는 방법은 주부에 대한 배상을 타인의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부의 노동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즉 각 주부들이 가정에서 수행하는 가정노동량과 그것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입게되는 손해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주부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장에서는 여러 관련변인과 다양한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보편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평가방법에 따라 주부의 가정노동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1-1. 상실비용직 측면에서의 평가
(총합적 대체비용법, 전문가 대체비용법)

1-2. 상실임금직 측면에서의 평가
(기회비용법, 요구임금 방법, 주관적 평가방법)

〈연구문제 2〉: 가정환경적 변수에 따라 주부의 가정노동가치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가정환경적 변수가 가정노동가치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느정도인가?

〈연구문제 4〉: 주부 개인별 및 유형별로 가정노동가치는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도구 및 대상

조사도구는 면접지로써 한 가정의 주부가 응답하도록 하였고 면접내용은 가정환경적 변수에 관한 문항, 주부의 가정노동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가정노동의 주관적 가치에 관한 문항 등 3개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은 고용인을 두지 않은 핵가족의 전업주부에 국한시켰으며 남편의 직업이 무직이거나 단순노무자인 가정과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것은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가정노동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가정노동과 직업노동 간의 선택기준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1990년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100명의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면접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1990년 11월 20일부터 29일 사이에 서울과 부산에서 면접조사원 40명이 60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서울과 부산의 주부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서울에 400부, 부산에 200부를 배부하였다.

조사된 600부의 질문지 중 부실기재된 것과 자료

로 적당치 못한 것을 제외하고 총 508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자료처리 및 결과 분석은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교차분류분석을 실시하였다.

4. 기초자료분석 및 가치산정 기준

1) 기초자료분석

빈도와 백분율을 통해 분석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이들 주부가 하루에 가정노동에 소비한 시간은 평균 11시간 6분으로서 평일에는 11시간 18분, 휴일에는 9시간 42분이었다. 10개 가정노동에 소비한 시간은 <표 3>과 같으며, 주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집 단	빈도(명)	백분율(%)	변수	집 단	빈도(명)	백분율(%)
가 족 수	2 명	81	15.9	주부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75	14.8
	3 명	111	21.9		고 졸	224	44.1
	4 명	178	35		대졸이상	209	41.1
	5명이상	138	27.2		계	508	100.0
주부의 연령	계	508	100.0	남편의 직업 직위	비고용가능성	27	5.3
	21~29세	144	28.3		자 영 업	101	19.9
	30~39세	152	30.0		사무, 기술직	209	41.1
	40~49세	129	25.4		전문, 관리직	160	31.5
50세 이상	83	16.3	작 부 가		11	2.2	
막내 자녀의 연령	계	508	100.0	계	508	100.0	
	4세이하	118	23.3	총 소득	80만원이하	132	26.0
	5~7세	41	8.1		81~130이하	207	40.7
	8~13세	86	17.0		131~180이하	105	20.7
	14~19세	94	18.5		181만원이상	64	12.6
20세이상	94	18.5	계	508	100.0		
학년전 자녀 유무	계	433	100.0	동 산	500만원미만	90	20.5
	있 다	159	36.9		500~1000미만	90	20.5
	없 다	272	63.1		1000~5000미만	206	47.1
결혼 지속 년수	계	431	100.0		5000만원이상	52	11.9
	8년 미만	199	46.2	계	438	100.0	
	9~14년	82	18.7	부 동 산	5000만원이하	122	25.8
	15~20년	66	15.3		5001~1억이하	131	27.7
20년 이상	159	36.8	1억1원~3억이하		159	33.6	
계	506	100.0	3억1원 이상		61	12.9	
				계	473	100.0	

* 빈도차이는 결측값(missing data)에 의한 것임.

〈표 3〉 주부의 가정노동시간

가정노동의 분류	가정노동시간		
	平日	휴일	평균
식사준비	2.6	2.6	2.6
식사후처리	1.4	1.3	1.4
청소	1.2	1.0	1.2
주택손질	0.4	0.4	0.4
세탁	1.1	0.8	1.1
다림질	0.5	0.4	0.4
신체적인 가족돌보기	1.1	0.7	1.8
미신체적인 가족돌보기	0.8	0.6	0.8
경영	0.9	0.5	0.9
장보기	1.3	1.4	1.3
계	11.3	9.7	11.1

에한 노동은 식사준비로서 하루 평균 2시간 36분을 소비하였고, 식사후처리에 1시간 24분, 장보기에 1시간 18분, 청소 1시간 12분등의 순서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또한 주부들이 가장 적은 시간을 소비한 노동은 주택손질과 다림질로서 각각 24분을 소비하였다. 가정노동시간은 평균 11.1시간으로 문숙재·정영금(1989), 임정빈(1981), 이정수(1984), 김

애실(1985)의 결과인 11.1시간, 11.8시간, 10.4시간, 10.4시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치산정의 기준

가정노동의 가치는 5가지의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되었고 각 평가방법별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i) 전문가 대체비용법

전문가 대체비용은 $\sum X_i F_i A_i n_i \times 30$ 으로 계산하였다. 이때,

X_i : 각 가정노동에 소비한 노동시간

F_i : 각 가정노동에 대체되는 시장임금률로서, 〈표 4〉와 같다. 시간당 임금(월급액+연간특별급액/12)÷월근로시간으로 계산하였으며, 여성직업인에게만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임금률을 적용하였다.

ii) 총합적 대체비용법

총합적 대체비용법

총합적 대체비용(주부의 1일 총가정노동시간×파출부의 시간당 임금률×30)으로 계산하였다. 파출부 임금은 실제 각 가정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파출부를 이용하지 않는 주부에 국한하였으므로, 노동부나 여

〈표 4〉 가정노동의 대체직종 및 임금률

가정노동분류	대체직종	임금률(원/시간)
식사준비	조리사	1,988
식사후처리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부 관련종사자	2,281
청소	청소원 및 관련 종사자	1,436
주택손질	건물관리원	2,270
세탁	세탁공	1,886
다림질	세탁공	1,886
신체적 가족돌보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부 관련종사자	2,281
어린자녀와 놀아주기	하덕전 교육교원	3,186
국민학생의 공부보아주기	초등교육교원	4,705
중고등학교생의 공부보아주기	중고등 교육교원	4,731
가정계획과 가족회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리자	6,208
가계부정리	경리 및 출납원	2,090
은행과 관공서 일보기	경리 및 출납원	2,090
시장보기와 쇼핑하기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 사무원	2,389

자료 :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1988, 노동부

(대전년 임금상승을 고려하여 1990년도 직종별 임금률로 환산하였음)

성단체, 사회복지기관등에서 협의한 임금인 1990년 말 1일 12,000원(시간당 1,500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iii) 기회비용법

기회비용법은 <표 5>와 같이 주부와 동일한 연령 및 학력을 가진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을 이용하였고 월평균 임금은 (월급여액+연간특별급여액/12)로 계산하였다.

<표 5> 연령별, 학력별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

연령 학력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18~19	270,172	282,079	-
20~24	312,151	331,756	496,461
25~29	312,692	410,377	624,825
30~34	295,873	476,502	883,249
35~39	297,318	461,266	1,104,679
40~44	296,510	479,373	1,182,009
45~49	296,198	449,703	1,357,754
50~54	291,583	484,848	1,416,402
55~59	270,011	418,435	1,409,999
60~	237,136	568,385	1,593,273

자료 :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1988, 노동부.

(대전년 임금상승율을 고려하여 1990년도

직종별 임금률로 환산하였음)

iv) 요구임금방법

요구임금방법에서는 전업주부들이 시장노동에 종사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가정보동의 화폐가치로 간주하였다.

v) 주관적 평가방법

주관적 평가방법에서는 '주부님께서는 자신의 주부역할을 돈으로 계산해 볼 때 한달에 얼마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정보동에 대한 주관적 가치라고 보았다.

IV. 결과 및 해석

1. 가정보동의 가치

가정보동가치를 평가방법별로 비교해 보면, <표 6>

<표 6> 평가방법별 가정보동가치

평가 방법	가치(원/1개월)
종합적대체비용법	497,996
전문가대체비용법	676,847
기회비용법	616,683
요구임금방법	707,601
주관적 평가방법	540,366

*1990년 기준임

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도 현재 1개월당 종합적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치는 497,996원,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치는 676,847원, 기회비용법에 의한 가치는 616,683원, 요구임금 방법에 의한 가치는 707,601원, 주관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치는 540,366원으로 산정되었다.

이 결과를 문숙재, 정영규(1989)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1988년도를 기준으로 계산된 종합적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정보동가치인 420,469원,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정보동가치인 538,438원, 기회비용법에 의한 가치인 529,941원보다 증가되었다. 그러나 요구임금방법에 의한 가치인 729,201원, 주관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치인 502,391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 및 전문가 대체비용법에서는 시장임금상승률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가정보동가치가 상승되었는데, 이 중 종합적 대체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연구대상의 차이로 인해 1988년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률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연도별 가치간에 차이가 적었다. 그러나 이때 동일한 종류의 과출부 임금(사회복지 기관등에서 협의한 임금이 1989년 초에는 1일 8,000원에서 1990년 말에는 1일 12,000원으로 상승)을 적용하였다면 가치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였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험금을 중심으로 본 평가 현황에서 제시된 사례에 적용시켜 보면 주부들이 당하는 불이익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주부의 노동량이 고려된 종합적 대체 비용(OSE)과 전문가 대체비용(SSE)을 이용하여 비교해보도록 한다(<표 7> 참고).

이 결과를 통해 보면, 사례 1과 같이 35세이며 자녀가 2명 있는 4인가정의 주부가 사망하였을 때, 90

〈표 7〉 보험금액의 비교

(단위 : 원, 90년 기준)

사례	1	2	3	4	5
지급 보험금	32,601,200	23,567,030	10,497,340	10,555,590	6,002,870
OSE 기준					
보험금	52,821,290	37,076,200	12,974,650	18,538,890	10,403,960
차액	20,220,090	13,509,170	2,477,310	7,983,300	4,401,090
상승율(%)	62	57	24	76	73
SSE 기준					
보험금	71,791,610	50,391,800	17,634,390	24,977,950	13,953,750
차액	39,190,410	26,824,770	7,137,050	14,422,360	7,950,880
상승율(%)	120	114	68	137	132

* OSE : 총합적 대체비용법, SSE : 전문가 대체비용법

년도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32,601,200원이지만 과출부 고용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이보다 약 62%가 더 많은 52,821,29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또 전문가 대체비용을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보다 39,190,410원이 더 많은 71,791,610원의 보험금이 이주부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이것은 실제 보험금보다 약 120%나 상승된 배상액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인가정의 42세인 주부의 사망시에는 사례 2의 경우 실제 23,567,03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총합적 대체 비용으로 계산하면 57%가 상승된 37,076,200원이, 전문가 대체비용으로 계산하면 114%가 상승된 50,391,800원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총합적 대체비용을 이용하여 산정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20~70%정도 상승하게 되며 전문가 대체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100% 이상 상승하게 된다.

이것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배상액과 적정수준의 배상액과의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주는 것이며 과출부 고용비용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용노임인 월 276,250원은 91년도에 402,500원으로 상승하기는 하지만 대체비용도 매년 상승되므로 주부들에 대한 특정 임금의 적용이 요구된다.

2. 가정환경적 변수에 따른 가정노동 가치

가정환경적 변수에 따라 가정노동의 가치에 어떠

한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5가지 평가방법별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첫째, 총합적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정노동가치는 가족수, 막내자녀의 연령, 학령전 자녀유무, 결혼지속년수,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수의 영향을 보면, 3명일 때 가치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수가 3명일 때 12.3시간이라는 가장 많은 시간을 가정노동에 소비하였기 때문에 소비시간의 영향이 노동가치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것은 막내자녀의 연령이나 학령전 자녀 유무의 영향을 통해 증명될 수 있는데, 막내자녀의 연령이 4세이하일 때 가정노동가치가 가장 크며, 5-7세, 8-19세, 20세 이상의 순서로 가치가 하락하여 자녀가 성장한 후에는 가정노동시간이나 가치가 모두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령전 자녀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가정노동가치가 큰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다.

둘째,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정노동가치는 가족수, 학령전 자녀유무, 막내자녀의 연령, 주부의 연령, 결혼지속년수, 주부의 교육수준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족수가 3명일 때 가치가 가장 높고 2명일 때는 노동가치가 작게 나타났다. 또 학령전 자녀가 없을 때보다 학령전 자녀가 있을 때 가정노동가치가 훨씬 높았으며, 특히 막내자녀가 4세 이하일 때 가치가 가장 높았다. 막내자녀 연령이 5세이후부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정노동가치가

〈표 8〉 가정환경적변수에 따른 가정노동기차

변수	집 단	빈도	총합적대비용		신분가대비용		기회비용		요구/임금		수권적필가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가족수	2명	81	398,975	***	588,744	19.67	585,174	0.81	661,392	1.67	474,937	2.48
	3명	111	555,597		867,870		614,570		660,455		525,909	
	4명	178	517,616		798,589		648,503		754,386		546,232	
	5명 이상	138	485,224		745,076		610,170		725,969		560,843	
	21~29세	144	512,565		784,823		545,464		664,894		472,986	
주연부위령	30~39세	152	512,464	3.02	801,257	4.81	629,516	9.70	679,252	2.39	524,600	6.71
	40~49세	129	485,061		765,839		593,439		785,484		588,527	
	50세 이상	83	452,025		667,379		776,704		734,416		583,659	
	4세 이하	118	587,294	***	911,987	14.47	587,794	1.22	688,034	1.12	483,390	3.29
	5~7세	41	539,240	12.21	831,761		580,394		637,500		515,851	
래닝	8~13세	86	487,352		784,696		624,636		711,250		567,326	
	14~19세	94	494,446		755,623		643,340		735,000		590,213	
	20세 이상	94	448,370		659,700		682,747		786,517		570,968	
	있나	159	558,559	***	871,507	20.87	628,570	0.00	673,218	2.82	509,686	5.12
	없나	272	487,619	20.09	750,051		627,033		715,729		565,203	
종교	8년 이하	21	517,346		745,505		589,270		647,005		476,432	
	9~14년	82	512,126	3.72	806,166	5.95	610,005	1.38	702,532	1.59	500,214	7.90
	15~20년	66	507,576		803,984		660,543		746,875		577,273	
	20년 이상	159	462,918		691,359		649,018		757,383		580,570	
	종교이하	75	439,739	**	670,875	**	293,573	***	572,794		461,467	
의욕준위	고졸	224	519,085	6.79	801,529	6.65	454,242	383.0	694,907	6.63	530,676	5.57
	대졸 이상	209	466,791		761,402		916,197		773,171		588,077	
	피고용가능성	27	461,306	0.48	709,802		383,401		568,750		487,037	
	자영업	101	492,669		753,755	0.41	472,227	***	612,755	5.86	509,109	5.34
	사무, 기술직	209	505,472		775,251		570,201	30.23	697,525		508,454	
종소통	전문, 관리직	160	496,630		770,585		797,905		787,338		580,566	
	자분	11	495,049		761,482		194,702		106,636		788,182	
	30만원 이하	132	506,560		787,166		516,782	***	607,252	***	431,136	
	81~130만원	207	490,580	0.65	752,424	0.92	548,495	32.14	671,538	11.11	505,463	26.39
	131~180만원	10	511,351		783,043		721,202		788,725		625,714	
동산	181만원 이상	64	484,015		732,873		902,709		927,869		703,968	
	500만원 미만	90	510,500		789,183		582,555		632,955		468,889	
	500~1000만원	90	497,870	0.25	769,248	0.31	562,298	4.75	628,161	3.60	467,416	10.37
	1000~5000만원	206	494,989		758,253		619,155		756,000		576,893	
	5000만원 이상	52	488,520		752,164		760,085		790,217		614,231	
부동기	3000만원 이하	157	489,049		751,715		528,382	***	694,990	11.06	465,871	18.73
	5000만원~1억 이하	131	495,528	0.86	757,794	0.82	550,901	20.87	694,339		479,924	
	1억원~3억 이하	159	511,692		793,412		677,130		770,058		566,990	

감소하기는 하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으며, 20세 이후에 가정노동가치가 격감하여 타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자녀가 1명일 때는 어린 자녀일 경향이 높아 가정노동량이 많게 되므로, 가족수의 영향도 자녀의 연령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기회비용법에 의한 가정노동가치는 주부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지위, 주부의 연령, 총소득, 동산, 부동산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부가 50세 미만일 때 보다 50세 이상일 때 가정노동가치가 높았으며, 교육수준별로 주부가 대졸이상 일 때 가정노동가치가 가장 높았고,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졌을 때 가치가 가장 낮았다. 또 이 변수들과 관계가 깊은 남편의 직업지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자본가, 전문·관리직, 사무·기술직, 자영업, 피고용기능공 가정의 주부를 순서로 가정노동가치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동산이 많은 집단일수록, 부동산이 많은 집단일수록 가정노동가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주부연령층에 따른 재산축적이나 주부의 높은 교육수준에 의한 소득 및 자산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요구임금법에 의한 가정노동가치는 주부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지위, 소득, 동산, 부동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주부의 교육수준별로 중졸 이하 집단보다 고졸이상집단의 노동가치가 더 높았으며, 고졸집단보다 대졸이상집단의 가치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또 남편의 직업지위별로 보면, 자본가, 전문관리직 및 사무기술직, 자영업 및 피고용기능공의 순으로 주부의 가정노동가치가 낮아졌다.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정노동가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130만원 이하인 집단, 131~180만원인 집단, 181만원 이상인 집단의 순서로 가정노동가치가 높아졌다. 동산·부동산에 따라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동산이 1,000만원 이상인 집단이 그 이하인 집단보다 가정노동가치가 높았으며, 부동산이 5,000만원 이하인 집단, 5,000만원~3억원인 집단, 3억원 이상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주관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정노동가치는 가족수만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모든 연령변수, 교육 및 직업변수, 소득 및 자산변수들이 영향을 미쳐 대체로 연령이 높거나 결혼지속년수가 긴 집단의 노동가치가 높았고 주부의 교육수준이 고졸이상인 집단의 노동가치가 높았으며 자본가 가정이 그외의 집단보다 노동가치가 높았다. 또 총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집단일수록 주관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정노동가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수, 막내자녀의 연령, 학령전 자녀유무 등의 변수에 의한 차이의 유의도가 낮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 가정노동가치는 주부들이 수행하는 가정노동량과는 관계가 적으며 연령변수의 영향은 연령증가에 따른 소득 및 자산의 차이로 인해 간접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종합적 대체비용법 및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정노동가치에는 막내자녀의 연령을 비롯하여 가족수, 학령전 자녀유무, 주부연령 등의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부들이 수행하는 가정노동시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기회비용법, 요구임금법, 주관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정노동가치에는 총소득을 비롯하여 동산, 부동산, 교육, 직업지위 등의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정노동량보다는 주부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좌우됨을 알 수 있다.

3. 가정노동가치에 대한 관련변수들의 영향력

가정노동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수, 주부의 연령, 막내자녀의 연령, 학령전 자녀유무, 결혼지속년수, 주부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지위, 총소득, 동산, 부동산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한 변수중 VIF값을 비교하여 주부의 연령, 막내자녀의 연령, 결혼지속년수 중에서 주부의 연령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가정노동가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제 변수들의 영향력이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각 방법별로 살펴보면 우선 종합적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정노동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연령, 주부의 교육수준, 가족수로서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

〈표 9〉 가정노동가치에 대한 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종합적대체비용 (Y ₁)		전문가대체비용 (Y ₂)		기회비용 (Y ₃)		요구임금 (Y ₄)		주관적가치 (Y ₅)	
	B(bi)	Beta	B(bi)	Beta	B(bi)	Beta	B(bi)	Beta	B(bi)	Beta
주부의 연령(X ₁)	-6.634.85	-0.37 ^{**}	-13116	0.43 ^{***}	14993	0.39 ^{***}	487.24	0.01	2728.11	0.10
주부의 교육수준(X ₂)	26844	-0.13 [*]	45271	0.12 [*]	387836	0.84 ^{***}	117648	0.20 ^{**}	58567	0.17 ^{**}
가족 수(X ₃)	34126	0.19	67032	0.22 ^{**}	6587.11	0.02	38694	0.08	-14235	-0.05
남편의 직업지위(X ₄)	9221.92	0.06	18842	0.07	4723.50	0.01	40911	0.09	-6045.0	-0.02
학령전 자녀유무(X ₅)	-7042.81	-0.02	5148.3	0.02	11933	0.02	69824	0.08	33893	0.06 ^{**}
총 소득(X ₆)	-4.13	-0.03	-87.81	0.02	493.40	0.08 ^{**}	14.13	0.02	897.51	0.18 ^{**}
동 산(X ₇)	-49.08	-0.06	-73.44	0.05	51.44	0.03	21.48	0.01	37.80	
부 동 산(X ₈)	-4.60	-0.03	21.71	0.02	63.00	0.04	272.93	0.12	126.72	0.10
Constant	493949		776433		-1668373		-262767		119430	
R ²	0.128		0.153		0.748		0.102		0.160	

* p < .05, ** p < .01, *** p < .001

준이 높을수록, 가족수가 많을수록 종합적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정노동가치가 높아진다.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정노동가치에서도 변수들의 영향력이 위와 같은 경향을 보여 주부의 연령과는 부적의 관계, 교육수준 및 가족수와는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어린자녀가 있어 가정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며 가족수가 많을수록 가정노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회비용법에 의한 가정노동가치에는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총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모두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특히 교육수준(Beta=1.84)과 연령(Beta=0.39)의 영향력이 매우 커서 이 가치의 대부분을 결정하고 있다. 한편 요구임금법에 의한 가정노동가치에는 주부의 교육수준만이 주관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치에는 주부의 교육수준과 총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총소득이 많을수록 가치가 증가하게 된다.

4. 주부개인별 및 유형별 가정노동가치

주부들은 그들의 연령이나 교육수준등이 서로 상이하여 가족수나 소득등이 서로 다른 다양한 환경에 속해 있으므로 개별 주부의 가정노동가치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 주부가 수행하고 있는 가정노동

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위해 회귀식을 통해 개별주부의 노동가치를 평가방법별로 추정하여, 이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가정유형별로 가정노동가치를 산출하였다.

1) 주부개인별 가정노동가치

각각의 환경에 처한 주부의 가정노동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으며, 각 변수값과 〈표 9〉에 제시된 비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이 회귀식에 대입하면 주부 개인별 가정노동가치가 평가방법별로 추정된다.

$$Y_i = a + b_1X_1 + b_2X_2 + b_3X_3 + b_4X_4 + b_5X_5 + b_6X_6 + b_7X_7 + b_8X_8 + c_i$$

Y_i: 평가방법별 가정노동가치(i=1, 2, 3, 4, 5.)

a: 상수

b_i: 독립변수(X_i)에 따른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X₂(주부연령): 23, 24, 25, ... 58세

X₃(주부 교육수준): 국졸 2, 중졸 3, 고졸 4, 대졸 5, 대학원 이상 6.

X₄(남편직업): 피고용기능공 3, 자영업 4, 사무기 술직 5, 전문관리직 6, 자본가 7.

X₅(학령전 자녀): 유 0, 무 1

X₆(총소득): 50-300(단위: 만원)

X₇(동산): 10-1000(단위: 십만원)

X₈(부동산): 10-1000(단위: 백만원)

위에 제시된 회귀식을 통해 가정노동 가치를 추정해보면 각각의 주부가 서로 다른 가정환경하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정노동의 화폐적 가치를 알 수 있으며, 주부의 노동에 대해 스스로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부의 상황이 모두 상이하므로 모든 주부에게 적합한 회귀식이 정교하게 작성될 수는 없어 다소의 오차가 존재한다.

실제로 가정환경적 조건이 서로 다른 주부들의 가정노동가치를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 계산하여 보면, 주부별로 가치가 비교되며, 또 평가방법별로도 가치가 산출되어 버린다.

주부 1, 2, 3, 4.의 가정노동가치를 평가방법별로 비교하여 보면 <표 10>과 같다. 주부1과 2를 비교하면 보면, 소득 및 자산이나 남편의 직업은 동일하나, 주부1의 경우에는 학령전 자녀가 있고 주부2의 가정보다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가정노동시간이 많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노동시간에 좌우되는 총합적 대체비용 및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정노동가치가 주부1의 경우에 더 크며, 반면에 연령이 낮기 때문에 기타 방법에 의한 가치가 다소 적다고 볼 수 있다.

주부2와 3을 비교하여 보면, 주부3의 경우에는 주부4의 경우보다 소득, 자산 등이 많기 때문에 기회비용법, 요구임금, 주관적 평가에 의한 가치가 높게 되며, 가정노동시간을 결정하는 조건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이 총합적 대체비용법 및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치에는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주부3과 4를 비교하면, 소득이나 자산 등의 조건이 동일하므로 요구임금 및 주관적 평가에 의한 가정노동가치는 비슷하며, 주부4의 경우에는 연령이 적으므로 가정노동시간에 좌우되는 노동가치는 높아지고 기회비용에 의한 가정노동가치는 낮아진다.

<표 10> 주부개인별 가정노동가치 및 사망보험금

		주부1	주부2	주부3	주부4
가정 환경적 변인	연령	35세	48세	48세	35세
	학력	고졸	고졸	대졸	대졸
	가족수	4명	4명	3명	3명
	남편직업	사무, 기술직	사무, 기술직	전문, 관리직	전문, 관리직
	학령전 자녀	유	무	무	무
	소득	80만원	80만원	200만원	200만원
	동산	1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부동산	5000원	5000만원	3억원	3억원
방법별 가치	총합적대체비용 (원)	546,251	452,958	433,620	519,870
	전문가대체비용 (원)	847,522	682,162	644,756	815,264
	기 회 비 용 (원)	452,762	635,738	1,130,418	935,509
	요 구 임 금 (원)	601,134	677,293	875,676	869,341
	주 관 적 평 가 (원)	443,933	513,291	734,550	699,085
	현재 지급액 (원)	32,601,200	16,982,660	15,704,370	30,207,860
사망 보험금	OSE 기준				
	보 험 금 (원)	61,239,590	25,735,000	22,942,180	54,201,990
	차 액 (원)	28,638,390	8,752,340	7,237,810	23,994,130
	상승율 (%)	88	52	46	79
	SSE 기준				
	보 험 금 (원)	93,196,650	37,087,480	32,652,320	80,295,350
	차 액 (원)	60,595,450	20,104,820	16,947,950	50,087,490
	상승율 (%)	186	118	108	66

*OSE : 총합적 대체비용법, SSE : 전문가 대체비용법

끝으로 주부1과 4를 비교하여 보면, 주부1의 경우에는 주부4의 경우보다 가족수가 많고 학령전 자녀가 있으므로 총합적 대체비용 및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정노동가치는 높아지고, 반면에 소득이나 자산이 적으므로 요구임금 및 주관적 평가에 의한 노동가치는 낮게 나타난다. 또 기회비용법에 의한 가치는 학력의 차이로 인해 달라지게 된다. 이와같이 주부들의 개별 가정노동가치를 비교해 보면, 주부들에게 주어진 가정적 조건(ex: 가족수, 막내연령)이나 주부 자신에게 내재된 조건(ex: 학력, 연령 등)들의 차이에 따라 가정노동가치가 달라지며, 가정적 조건의 차이인가 혹은 내재된 조건의 차이인가에 따라 평가방법별 가정노동가치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주부의 가정노동가치가 상이하므로 이에 따른 사망보험금에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주부1의 경우에 현재 지급액이 32,601,200원인데 비해 총합적 대체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61,239,590원이 되므로 현재 지급액의 88%에 달하는 28,638,390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전문가 대체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더욱 차액이 커져, 주부는 현재 지급액보다 186%나 상승된 93,196,650원의 보험금을 실제로 요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상승율이 다소 적은 주부3의 경우를 보더라도 가족수가 3명인 48세의 주부는 사망시 총합적 대체비용에 의하면 현재 지급액 15,704,370원보다 7,237,810원이 더 많은 22,942,180원을, 전문가 대체비용에 의하면 16,947,950원이 더 많은 32,652,320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주부3의 경우에 상승율이 낮은 것은 다른 주부들보다 가정노동량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에 의한 평가에 제시한 사례1의 주부와 여기에서 제시한 주부1의 조건이 동일한 데 비해 보험금이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사례1에서는 전체 주부의 평균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반면에 주부1에서는 가정노동이 많이 요구되는 개별 가정의 특성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본 연구의 목적과 연결시켜 보면, 상해시 주부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모든 주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임금과 병행하며 주부의 특성 및 조건에 따른 다양한 임금이 제시되면 법률적 차원에서

자신의 노동가치에 근거한 배상액을 요구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또 특별히 많은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부 개인별 가정노동가치를 근거로 보험금을 추산하여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다.

2) 주부 유형별 가정노동가치

주부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주부의 가정노동가치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주는 변수들 중에서 선택하였다. 즉 총합적 및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정노동가치에서는 가족수와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였고 기회비용법, 요구임금방법, 주관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정노동가치에서는 교육과 연령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교차분류분석과 분산분석을 통해 유형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우선 총합적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정노동가치를 주부의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표 11>과 같이 가족수가 3인 이상이며 막내자녀가 1~4세인 가정의 주부인 경우에 606,850원으로서 가장 높았으며 3인 이상이며 막내자녀가 5~19세인 가정의 주부일때 489,995원, 3인이상이며 막내자녀가 20세 이상인 가정의 주부일때 448,370원, 2인가정의 주부일때 398,975원의 순서로 가치가 감소되었다.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정노동가치도 이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 가족수가 3인이상이며 막내자녀가 1~4세인 가정의 주부일때 955,548원, 가족수가 3인 이상이며 막내자녀가 5~19세인 가정의 주부일때 781,062원, 가족수가 3인 이상이며 막내자녀가 20세 이상인 가정의 주부일 때 659,700원, 2인 가정의 주부일 때 588,744원의 가정노동가치를 갖으며 각 연령별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녀가 성장할수록 가정노동량이 적어지며 부부만이 사는 가정일 경우에 가정노동량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려주며 여러 요인에 의해 주부의 노동량이 결정됨으로 알려준다.

한편 기회비용법, 요구임금방법, 주관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정노동가치를 주부의 학력 및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우선 기회비용법에 의한 가정노동가치는 고졸이하의 20~30대 주부(유형 I)일 때 427,152원, 고졸이하

〈표 11〉 주부유형별 가정노동가치(1) : 총합적 대체비용법, 전문가 대체비용법

유형	평가방법	총합적 대체비용		전문가 대체비용	
		평균(원)(N)	Duncan's Test	평균(원)(N)	Duncan's Test
유형 I		348,975(81)	D	588,744(81)	D
유형 II		606,850(109)	A	955,548(107)	A
유형 III		499,995(221)	B	781,062(221)	B
유형 IV		448,370(94)	C	659,700(94)	C
F값		34.66***		41.81***	

유형 I : 2인가정의 주부

*** p < .001

유형 II : 3인이상 가정이면서 막내자녀가 1~4세인 가정의 주부

유형 III : 3인이상 가정이면서 막내자녀가 5~19세인 가정의 주부

유형 IV : 3인이상 가정이면서 막내자녀가 20세 이상인 가정의 주부

〈표 12〉 주부유형별 가정노동가치(3):기회비용법, 요구임금방법, 주관적평가방법

유형	기회비용		요구임금		주관적평가	
	평균(원)	Duncan's Test	평균(원)	Duncan's Test	평균(원)	Duncan's Test
유형 I	427,125	C	627,857	B	472,500	C
유형 II	401,359	C	702,431	B	551,503	B
유형 III	745,820	B	714,189	B	525,067	B
유형 IV	1,349,357	A	926,316	A	679,310	A
F값	1056.91***		7.58***		11.08***	

유형 I : 고졸이하의 20~30대 주부

*** p < .001

유형 II : 고졸이하의 40~50대 주부

유형 III : 대졸이상의 20~30대 주부

유형 IV : 대졸이상의 40~50대 주부

〈표 13〉 주부유형별 사망보험금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지급보험금(원)	31,053,190	36,378,720	27,753,650	10,795,770
OSE 기준				
보험금(원)	38,517,390	75,965,430	47,558,870	15,653,000
차액(원)	7,464,200	39,586,710	19,805,220	4,857,230
상승율(%)	24	109	71	45
SSE 기준				
보험금(원)	63,126,320	117,719,220	72,439,600	21,616,730
차액(원)	32,073,130	81,685,500	44,685,950	10,820,960
상승율(%)	103	224	161	100

* OSE : 총합적 대체비용법, SSE : 전문가 대체비용법

** 유형 1 : 2인가정, 30세 주부 유형 2 : 4인 가정, 30세 주부

 유형 3 : 4인가정, 40세 주부 유형 4 : 3인 가정, 55세 주부

의 40~50대 주부(유형 II)일 때 401,359원, 대졸 이상의 20~30대 주부(유형 III)일 때 745,820원, 대졸 이상의 40~50대 주부(유형 IV)일 때 1,349,357원으로서 첫번째 두 유형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대체로 학력이 높고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정노동가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 가치에서는 학력간의 격차가 심한데, 이것은 시장임금에서의 학력간 격차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요구임금방법에 의한 가정노동가치는 유형 I의 627,857원, 유형 II의 702,431원, 유형 III의 714,189원, 유형 IV의 926,316원의 순서로 높아지고 있으며 유형 I·II·III과 IV 사이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치는 다소 경향이 달라서 유형 I의 472,500원, 유형 III의 525,067원, 유형 II의 551,503원, 유형 IV의 679,310원의 순서로 증가하여 유형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에서 제시된 화폐가치들은 결과적으로 주부의 상해시 보험금 추산에 이용되어야 하는데, 보험금은 노력의 댓가에 맞게 결정되어야 하므로 기회비용법, 요구임금방법, 주관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치보다는 종합적 대체비용법이나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의한 화폐가치를 근거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표 11>에 제시된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을 계산하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자녀가 없는 2인가정의 30세 주부는 사망시 31,053,1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나 종합적 대체비용에 의하면 38,517,390원을, 전문가 대체비용에 의하면 32,073,130원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다. 또 자녀가 1~4세인 4인 가정의 30세 주부가 받는 보험금은 36,378,720원이지만 이 주부는 가정에서의요구가 최대인 집단에 속했기 때문에 노동량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109% 상승된 75,965,430원(종합적 대체비용 기준)의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과출부를 대신 고용한다고 가정할 때의 추산액이므로 주부를 대신해주는 최소한의 액수가 된다. 따라서 전문가 대체비용에 의하면 1억원 이상의 피해보상이 요구된다. 유형3과 4에서도 마찬가지로 50~100%정도로 보험금이 상승·지급되어야만 주부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주부의 가정노동가치를 가정환경적 변수에 따라 산정하고 평가방법별로 파악해 보며 주부 개인별·유형별로 비교하여 봄으로써 가정노동가치를 재인식시키며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을 기준으로 전업 주부의 가정노동가치를 산정한 결과, 종합적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치는 월평균 497,996원,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치는 676,847원, 기회비용법에 의한 가치는 616,683원, 요구임금방법에 의한 가치는 707,601원, 주관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치는 540,366원으로 계산되었다. 이 결과를 근거로 한다면, 자녀가 2명있는 4인가정의 35세 주부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주부의 가정노동을 모두 과출부에게 대체한다고 보면 52,821,290원(90년도 기준)의 보험금이, 가정노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가에게 대체한다고 보면 71,791,610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것은 실제 지급액인 32,601,200원보다 62~120% 상승된 액수이다. 또 자녀가 1명 있는 42세 주부의 보험금은 현재 23,567,030원보다 57~114% 상승된 37,076,200원(종합적 대체비용 기준)과 50,391,800원(전문가 대체비용 기준)으로 추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계산된 가정노동의 화폐 가치를 근거로 보험금을 추산하면, 일용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종합적 대체비용을 이용했을 때 20~60%가, 전문가 대체비용을 이용했을 때는 100%이상 상승되어야 한다.

둘째, 가정노동가치에 유의한 차이를 주는 변수들은 평가방법별로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종합적 대체비용법이나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치는 가족수, 주부의 연령, 막내자녀의 연령, 학령전 자녀유무 등의 변수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기회비용법, 요구임금방법, 주관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치는 교육, 직업, 총소득, 동산, 부동산 등의 변수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셋째, 주부의 교육수준은 평가방법별 가정노동가

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총합적 및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치에는 주부의 연령과 가족수가, 기회비용법에 의한 가치에는 주부의 연령과 총소득이, 주관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치에는 총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네째, 가정환경적 변수를 이용하여 작성된 회귀식을 통해 주부 개인별 가정노동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식에 의하면 48세의 고졸주부로서, 가족수(확령전 자녀 없음)가 4명이고 남편의 직업이 사무·기술직이며 소득·동산·부동산이 각각 80만원·1,000만원·5,000만원일 경우에, 총합적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정노동가치는 월 452,958원으로 추산된다. 또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의하면 월 682,087,480원이 된다. 이 금액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16,982,660원보다 800만~2,000만원이 더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주부유형별로도 노동가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총합적 및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치는 유형 I(2인가정의 주부), 유형 IV(3인이상이며 막내자녀 20세 이상인 가정의 주부), 유형 III(3인이상이며 막내자녀 5~19세인 가정의 주부), 유형 II(3인이상이며 막내자녀 1~4세인 가정의 주부)의 순으로 증가되었다. 기회비용법, 요구임금법, 주관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치는 대체로 유형 I(고졸이하의 20~30대 주부), 유형 II(고졸이하의 40~50대 주부), 유형 III(대졸이상의 20~30대 주부), 유형 IV(대졸이상의 40~50대 주부)의 순으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주부 유형별 가치를 근거로 사망보험금을 추산해보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1~4세인 4인 가정의 30세 주부가 받는 보험금은 36,378,720원이지만 이 주부는 가정에서의 요구가 최대인 집단에 속해있기 때문에 노동력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109% 상승된 75,965,430원(총합적 대체비용법 기준)의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

이와같이 주부개인별·주부 유형별 가정노동가치를 주부의 보험금 산정에 이용하면 주부들의 노동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음으로 인한 피해를 규명할 수 있다. 즉 총합적 대체비용을 근거로 보험금을 산정하면 현재 지급되는 보험금보다 20~100%정도 상승

하게 되며, 전문가 대체비용을 근거로 하면 100~200% 이상 상승하게 된다. 상승율은 주부의 노동량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유형 I과 IV는 노동시간이 비교적 적어 상승율이 적은 반면에, 유형 II와 III은 가정내적인 요구가 많은 시기로서 주부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현재 지급액보다 상승폭이 커지게 된다. 특히 가정일을 파출부에게 대체시키는 비용보다도 적은 임금을 주부에게 적용시킴으로 인해 모든 주부의 사망 보험금이 부당하게 책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총합적 대체비용법 및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치는 가정노동시간을 근거로 계산된 것이므로 주부의 상해시 가정노동수행불능으로 인한 노동을 시장대체자에게 위임한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임금액이다. 새로운 지출이 추가됨으로써 가정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므로 취업자의 경우에 상실수익액을 근거로 배상해주는 것과 같이 주부에게는 상실비용을 고려하여 사고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주부의 사고시 현재 지급되는 배상액과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한 배상액과의 차이는 일용노동자임금 적용의 불합리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정노동의 화폐가치를 토대로 새로운 배상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일용임금적용시에는 주부의 일을 대신하여 파출부를 고용하는 비용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게 되므로 가정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부들에게 합당하게 산정된 적정임금의 적용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가정노동시간의 조사와 대체임금의 결정이 요구되므로 가정노동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실증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가정노동량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주부들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하며,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사고발생시 배상액 산정의 문제만을 다루었으므로 기준시점에서의 가정노동 가치산정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주부들이 일생에 걸쳐 가정의 재산축적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즉 가정노동은 자녀의 출

생이나 성장에 따라 수행량과 내용이 변화하게 되므로 주부가 이미 수행해 온 가정노동량 및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되며 가정노동의 귀속가치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상속제 및 증여세의 문제, 이혼시의 재산분할--해결에 필요한 자료가 된다.

【참 고 문 헌】

- 1) 박운직, 「채권각론: 민법강의 IV」, 서울: 박영사, 1984.
- 2) 김종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II)」, 서울: 법원행정처, 1984.
- 3) 김선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 4) 김애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여성연구」, 제3권 4호, 한국여성개발원, pp.25~47, 1986.
- 5)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1988.
- 6) 문숙재, 「가정관리행동을 위한 인류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제19권 4호, pp.65~71, 1981
- 7) 문숙재, 「가정생산」, 서울: 신광출판사, 1988.
- 8) 문숙재, 「가정생산」, 서울: 신광출판사, 1991.
- 9) 문숙재, 「가사노동의 새로운 평가를 위한 연구」, 「여성문제연구」, 19집,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91.
- 10) 문숙재·정영금, 「도시주부의 가정생산시간 및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6권 2호, pp.103~118, 1988.
- 11) 문숙재·정영금, 「가정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여성연구」, 7권4호, 1989.
- 12) 문숙재·최 광, 「주부의 가사노동가치와 세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정부장관실 정책자료 90-6, 1990.
- 13) 소연경, 「주부의 요구임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8.
- 14) 스코트, A.C.,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서울: 풀빛, 1983.
- 15) 안국화재해상보험(주), 「자동차보험보상편람」, 1989.
- 16) 이기영,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본 가사노동의 의의와 그 전개」, 「사대논집」, 제6집,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pp.207~223, 1981.
- 17) 이정수,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2호, pp.103~132, 1984.
- 18) 임정빈,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9권 2호, pp.73~88.
- 19) 제일화재해상보험(주), 「자동차보험보상약관」, 1989.
- 20) 최명숙,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추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21) Adler, Hans J. and Oli Hawrylyshyn, "Estimates of the Value of Household Work, Canada, 1961 & 1971",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24, No.4, pp.333~355, 1978.
- 22) Chadeau, Ann, "Measuring Household Activities: Some International Comparisons", *ROIW*, Vol.31, No.3, pp.237~253, 1985.
- 23) Deacon, R.E. & F.M.Firebaugh, *Family resource management*, Mass: Allyn and Bacon, Inc., 1981.
- 24) Fitzsimmons, C. and F. Williams, *The Family Economy*, Ann Arbor: Edward Brothers, 1973.
- 25) Gauger, W., "Household work: Can we add it to the GNP?", *JHE*, October, pp.12~15.
- 26) Hawrylyshyn, Oli, "The Value of Household Services: A Survey of Empirical Estimates", *ROIW*, Vol.22, No.2, pp.101~131, 1976.
- 27) Muyphey, M., "The Value of Nonmarket Household Production: Opportunity Cost Versus Market Cost Estimates", *ROIW*, Vol.24, No.3, pp.243~255, 1978.
- 28) Muyphey, M., "Comparative Estimates of the Value of Household Work in the US. for 1976", *ROIW*, Vol.28, No.1, pp.29~43, 1982.
- 29) Weinrobe, Maurice, "Household Production and National Production: An Improvement of the Record", *ROIW*, Vol.20, No.1, pp.889~102, 1974.